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합29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양선화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216,890원 및 그중 235,216,568원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2020. 1. 14. 체결된 24,168,540원, 2020. 1. 30. 체결된 23,100,000원, 2020. 2. 3. 체결된 15,000,000원, 2022. 5. 22. 체결된 2,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26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B의 대출 실행

- 1) 원고는 2019. 6. 11. B과, B이 C은행으로부터 차용할 275,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33,75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9. 6. 11.부터 2020. 6. 10.까지(2020. 5. 27. 신용보증기간이 2021. 6. 1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의 대표자였던 망 D(2021. 1. 2. 사망)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B은 2019. 6. 13. C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2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설립과 B의 피고 명의 계좌 등으로의 송금내역

- 1) 망 D의 배우자였던 E은 2020. 1. 6. 피고를 설립하였다.
- 2) B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0. 1. 30. 23,100,000원, 2020. 2. 3.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3) B은 2020. 5. 22.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그다음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20. 6. 25.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9. 28. C은행에 236,686,308원(= 원금 233,750,000원 + 이자 2,957,1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9. 28. B에 대한 보증료 반환채무금 등 1,469,740원(이하 '2020. 9. 28.자 회수금'이라 한다)을 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33 내지 3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법인격 남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235,216,568원(= 대위변제금 236,686,308원 - 2020. 9. 28.자 회수금 1,469,740원)과 2020. 9. 28.자 회수금 상당액에 대한 하루치 지연손해금 322원(= 1,469,740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8% × 1일/365일) 합계 235,216,890원 및 그중 위 235,216,5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B은 2020. 1.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24,168,540원을, 기초사실 나.의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23,100,000원 및 15,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각 돈 상당액을 증여하였고, 위 각 증여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그런데 위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B의 대표자였던 D이 2020. 6.경부터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그에 따른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으로 인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3)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돈 합계 64,268,540(= 24,168,540원 + 23,100,000원 + 15,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017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다201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6, 27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 10, 11, 14, 15,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1. 6. 설립되었고, B은 2020. 6. 25. C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의 등기된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B의 목적 사업	피고의 목적 사업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컴퓨터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1. 전산장비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임대업 1. 컴퓨터 설비 자문업 1. 정보 자료 처리업 1. 기계부품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1. 기술 자문 및 교육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 도서 및 서적 출판업 1. 출판물 및 편집물 디자인기획, 제작, 인쇄업	1.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작, 교육, 서비스 및 공급 1. 3D프린터 설비 개발, 제작, 교육, 서비스 및 공급 1. 온라인콘텐츠 개발, 제작, 교육, 서비스 및 공급 1. 기술 서비스업(자문, 교육, 기타 엔지니어링, 공학연구개발업) 1. 도서 및 서적 출판업 1. 출판물 및 편집물 디자인기획, 제작, 인쇄, 판매(도소매)업 1. 각항 관련 인터넷 정보제공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1. 각항 관련 무역(수출입)업을 포함한 기타 중개무역 및 구매대행업무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부동산 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

다) 피고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그 당시 B의 본점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G건물]와 동일하다.

피고는 2020. 2. 3. 그 본점을 현재의 본점 소재지(이 판결의 당사자 표시란 기재와 같고, 그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는데, B도 2020. 2. 17. 그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4.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474,000,600원에 매수(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20. 1. 29.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망 D의 사망(2021. 1. 2.) 이후인 2021. 3. 22.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라) 피고 설립 당시 망 D은 B 발행주식총수 26,000주 중 20,000주, I은 나머지 6,000주의 주주명부상 주주였고, 망 D의 배우자였던 E은 피고 발행주식총수 2,000주 전부의 주주명부상 주주였다. 또한 피고 설립 당시 망 D은 피고의 감사로, E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E은 현재까지도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마) B은 2021. 3. 19.경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2020년도 매출 중 과반이 B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이고, 2021년도 매출 전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H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피고가 세무관서에 2021년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신고한 근로자는 E 한 명이다.

사) B은 기초사실 나.의 2),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것 외에도 피고 명의 계좌로 2020. 1. 29. 15,000,000원, 2020. 3. 9. 2,200,000원, 2020. 4. 7. 2,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3. 16.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이 피고 설립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B과 피고의 등기된 목적 사업의 일부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B과 피고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망 D은 피고 설립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2. 3.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B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폐업신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각 피고 매출의 차이가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것인지, 당초부터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기 때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마) 피고는 2020. 1. 30. J은행으로부터 339,000,000원, 43,000,000원 합계 382,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내지 그 분양대금 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B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B의 자산을 유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법인격 남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B의 각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0. 1. 14., 2020. 1. 30., 2020. 2. 3. 및 2020. 5. 22.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가 'B에 대하여 K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B에 대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하고 있는 금액 상당의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B의 대표자였던 망 D이 2020. 6. 초순경 L카드 등에 대한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 등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B이 2020. 6. 25. C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20. 5. 27. 별다른 보증조건의 변경 없이 신용보증기간을 2020. 6. 10.에서 2021. 6. 10.로 연장해준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2020. 5. 22.경 이전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각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피보전채권(사전구상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B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전구상채권은 원고 주장의 각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이 2020. 1. 14., 2020. 1. 30., 2020. 2. 3. 및 2020. 5. 22.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2020. 1. 14. F 명의 계좌로 24,168,54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F이 2020. 1. 14. B 명의 계좌로 24,168,540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3) 또한 기초사실 나.의 2), 3)항의 기재와 같이 B이 피고 명의 계좌로 2020. 1. 30. 23,100,000원 및 2020. 2. 3. 15,000,000원을, 2020. 5. 22.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내지 그 분양대금의 지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의 인지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2020. 1. 30. B으로부터 23,1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20. 3. 16. B에게 위 23,1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3, 3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이 피고 명의 계좌로 23,100,000원을 송금한 당일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내지 그 분양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지세 등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20. 3. 16.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2020. 1. 30. 피고에게 송금한 23,100,000원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20. 2. 3. B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 29. B에게 임대차기간 2020. 1. 29.부터 2021. 1. 29.까지,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B이 2020. 1. 29. 및 2020. 2. 3. 피고 명의 계좌로 각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2020. 2. 3. 피고에게 송금한 15,000,000원이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는, B이 2020. 5. 22.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E이 그다음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B에게 위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20. B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망 D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2020. 6. 4. B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0,000,000원을 B 명의 계좌 또는 망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2020. 5. 22.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이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B이 피고 또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B과 피고 사이에서 사해행위인 각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춘근, 판사 김재학, 판사 조용민